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 규정 마련 >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80호)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17호)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87호)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7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5
1.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15
2.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16

I.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연월일	회부연월일
2200480	박주민의원	2024. 06. 14.	2025. 10. 28.
2201917	정동만의원	2024. 07. 18.	2025. 10. 28.
2202387	전재수의원	2024. 07. 30.	2025. 10. 28.
2202672	박용갑의원	2024. 08. 08.	2025.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폭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박주민·정동만의원안은 기존 복지 할인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고, 전재수·박용갑의원안은 폭염·폭한 등 재난 시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특히, 박용갑의원안은 감면 비율(30% 이상)을 명시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나 경로당·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박주민의원안	정동만의원안	전재수의원안	박용갑의원안
<신 설>	제17조의3(전 기 요 금 의 감면) ① 전기판매사 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 는 사람 또 는 시설에 대하여 전 기 요 금 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 인 복 지	제17조의2(전 기 요 금 의 감면) 전기 판매사업자 는 전기사 용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 는 경우에 는 기후에 너지환경부 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기 요금을 감	제17조의3(전 기 요 금 의 감면) 전기 판매사업자 는 폭염· 혹한 등의 재난이 발 생한 경우 에는 대통 령 령 으 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 기 요 금 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의3(전 기 요 금 의 감면) ① 전기판매사 업자는 폭 염·혹한 등의 재난 이 발생한 경 우 에 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 기 요 금 을 감면할 수 있다.

현 행	박주민의원안	정동만의원안	전재수의원안	박용갑의원안
	<u>법」 제6</u> <u>조에 따</u> <u>른 중증</u> <u>장애인</u> 2. 「국가 <u>유 공 자</u> <u>등 예우</u> <u>및 지원</u> <u>에 관한</u> <u>법률」에</u> <u>따른 상</u> <u>이 등 급</u> <u>제 1 급 부</u> <u>터 제3급</u> <u>까 지 의</u> <u>상이자</u> 3. 「5·18 <u>민주유공</u> <u>자 예 우</u> <u>및 단체</u> <u>설 립 에</u> <u>관한 법</u> <u>률」에</u> <u>따른 신</u> <u>체 장해등</u> <u>급 제1급</u> <u>부터 제3</u>	<u>면할 수 있</u> <u>다.</u> 1. 「국가 <u>유공자 등</u> <u>예우 및 지</u> <u>원에 관한</u> <u>법률」 제4</u> <u>조에 따른</u> <u>국가유공자</u> 2. 「국민 <u>기 초 생 활</u> <u>보 장 법」</u> <u>제2조에 따</u> <u>른 수급자</u> <u>및 차상위</u> <u>계층</u> 3. 「노인 <u>복 지 법」</u> <u>제37조의3</u> <u>제1항에 따</u> <u>른 경로당</u> 4. 「사회 <u>복 지 사 업</u> <u>법」 제2조</u> <u>제4호에 따</u> <u>른 사회복</u> <u>지시설</u>		② <u>전기판</u> <u>매사업자는</u> <u>제1항에 따</u> <u>라 주택용</u> <u>전기요금을</u> <u>감 면 하 는</u> <u>경우 재난</u> <u>발생 해당</u> <u>월의 전력</u> <u>사 용 량 에</u> <u>따른 전기</u> <u>요금의 100</u> <u>분의 30 이</u> <u>상을 감면</u> <u>하여야 한</u> <u>다.</u> ③ <u>정부는</u> <u>전기판매사</u> <u>업자가 제1</u> <u>항 및 제2</u> <u>항에 따라</u> <u>전기요금을</u> <u>감 면 하 는</u> <u>경 우 에 는</u> <u>그 비용의</u> <u>전부 또는</u> <u>일부를 제4</u>

현 행	박주민의원안	정동만의원안	전재수의원안	박용갑의원안
	급까지의 5·18민 주화운동 부상자 4. 「독립 유공자에 우에 관 한 법 률」에 따른 독 립유공자 또는 독 립유공자 의 권리 를 이전 받은 유 족 1인 5.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 급자 및 차상위 계 층 6. 「노인 복지법」	5. 「장애 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 애인 6.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 법」 제66 조제3항제6 호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감이 필 요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전 기요금 감 면이 필요 한 경우로 서 기후에 너지환경부 령으로 정 하는 경우		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 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박주민의원안	정동만의원안	전재수의원안	박용갑의원안
	<u>제37조의</u> <u>3제1항에</u> <u>따른 경</u> <u>로당</u> 7. 「사회 <u>복지사업</u> <u>법」 제2</u> <u>조 제 4 호</u> <u>에 따른</u> <u>사회복지</u> <u>시설</u> 8. 가구원 <u>중 자녀</u> <u>가 3인</u> <u>이 상 인</u> <u>가 구[세</u> <u>대별 주</u> <u>민등록표</u> <u>상 세대</u> <u>주 와 의</u> <u>관 계 가</u> <u>“자”(子)</u> <u>3인 또는</u> <u>“손”(孫)</u> <u>3 인 으 로</u> <u>표 시 된</u> <u>가 구 를</u>			

현 행	박주민의원안	정동만의원안	전재수의원안	박용갑의원안
	<u>말 한 다]</u> <u>또는 만</u> <u>6세 이하</u> <u>의 초등</u> <u>학교 취</u> <u>학 전 자</u> <u>녀를 양</u> <u>육 하 는</u> <u>가구</u> 9. <u>폭염 또</u> <u>는 한파</u> <u>등 「재</u> <u>난 및 안</u> <u>전 관 리</u> <u>기본법」</u> <u>에 따른</u> <u>재난으로</u> <u>피 해 를</u> <u>입은 피</u> <u>해 주 민</u> <u>및 피해</u> <u>기업</u> 10. <u>그 밖에</u> <u>다른 법</u> <u>령 에 서</u> <u>전기요금</u> <u>을 감면</u>			

현 행	박주민의원안	정동만의원안	전재수의원안	박용갑의원안
	<u>할 수 있</u> <u>다고 정</u> <u>하는 사</u> <u>람 또는</u> <u>시설</u> ② <u>전기판</u> <u>매사업자는</u> <u>혹한기 또</u> <u>는 혹서기</u> <u>등 전기요</u> <u>금의 감면</u> <u>이 특별히</u> <u>필요하다고</u> <u>인 정 되 는</u> <u>시 기 에 는</u> <u>제 1 항 에</u> <u>따른 감면</u> <u>의 폭을 확</u> <u>대할 수 있</u> <u>다.</u> ③ <u>전기판</u> <u>매사업자가</u> <u>제1항 및</u> <u>제2항에 따</u> <u>라 전기요</u> <u>금을 감면</u> <u>하는 경우</u>			

현 행	박주민의원안	정동만의원안	전재수의원안	박용갑의원안
	국가는 전 기관매사업 자에게 감 면된 전기 요금에 해 당하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의 구 체적인 범 위 및 기준, 감면의 기 간, 감면의 내용 및 그 밖의 전기 요금 감면 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관		

현 행	박주민의원안	정동만의원안	전재수의원안	박용갑의원안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4. (생략) <신 설> 5. ~ 12. (생략)		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현행 제17조의2와 같음)		제49조(기금의 사용)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17조의3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지원</u> 5. ~ 12. (현행과 같음)

[통합 조문대비표(주요항목)]

현 행	박주민의원안 (안 제17조의3)	정동만의원안 (안 제17조의2)	전재수·박용갑의원안 (안 제17조의3)
<신 설>	장애인, 기초수급자, 미취학 자녀 가구등	국가유공자, 수급자, 장애인, 재난 피해주민등	폭염·혹한 등 재난 발생 시(박용갑안: 주택용 대상)
<신 설>	혹서기·혹한기 감면 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함	(박용갑) 요금의 30% 이상 감면
<신 설>	국가의 재정 지원	-	(박용갑)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결정은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은 법령이 아니라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을 통해 정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됨¹⁾.

한전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본공급약관에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할인제도²⁾ 및 초중고교 등에 대한 특례할인제도³⁾를 규정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한전의 별도 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시설부담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1)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3)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2] 참조

그런데,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관에 규정하거나 그 법적 근거를 지원대상에 따라 개별법에 각각 두는 것은 전기요금 감면 대상의 관점에서 근거의 명확성이 다소 떨어지고, 향후 전기요금 감면 제도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폭한기·혹서기 전기 소비가 급증⁴⁾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일시적으로라도 전기요금 감면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들은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은 만 3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포함하여 기본공급약관 및 다른 개별법으로 시행 중인 전기요금 감면 제도의 대상과 근거를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고, 특히 재난 수준의 폭염·혹한 발생 시 전기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거나(박용갑의원안) 혹서기·혹한기에 감면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감면 비용을 정부 재정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박주민·박용갑의원안) 명시하려는 것으로,

4) 예를 들어, '23년 8월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진 전기 거래량은 역대 여름철 중 가장 많은 약 5만1천기가와트시(GWh)로 잠정 집계되었음.

국민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한전의 재무적 비용부담을 일부 완화하여 폭염·한파로 인해 생명·신체 안전에 위협을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전기요금의 감면은 한전의 수익 악화 및 경영 자율성에 대한 제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전기요금 감면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과 구체적인 감면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한전의 경영 상황 및 요금 체계의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면 비용 지원 시 일반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어느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와의 약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요금 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②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이나 하절기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다양한 전기요금 감면 제도

가 시행⁵⁾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7

5)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과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재난 피해주민 전기요금 감면, 「에너지법」 제2조제7호의2 및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발급 등 여러 제도가 현재 시행 중임.

[참고자료 1]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현황

(단위 : 천호, 억원)

구 분	계약종별	도 입	할인내용(한도)	호수 (‘25.12)	할인금액				
			기존		‘21	‘22	‘23	‘24	‘25
장 애 인	주택용	'04. 3	월 8천원 한도	658	1,224	1,437	1,257	1,218	1,216
상이유공	주택용	'04. 3		6	14	16	13	12	12
독립유공	주택용	'05.12		7	12	15	13	13	14
기초생활 수 급 자	주택용	'05.12	월 8천원 한도	1,199	1,325	1,663	1,692	1,768	2,003
			월 4천원 한도	363	249	364	365	399	428
	심 야	'08. 1	갑 31.4%, 을 20%	21	30	40	57	57	58
차상위 계 층	주택용	'10. 8	월 2천원 한도	177	201	239	200	184	176
	심 야	'08. 7	갑 29.7%, 을 18%						
3자녀 이 상	주택용	'09. 8	20% (월 12천원 한도)	515	849	915	847	810	800
대가족	주택용	'07. 1	1단계 낮은 요율 (월 12천원 한도)	299	321	328	297	276	266
출산가구	주택용	'16.12	-	592	741	804	794	784	834
사회복지 시 설	일반용	'07. 1	20%	109	842	946	1,188	1,241	1,276
	주택용	'07. 1	21.6%						
	심 야	'08. 1	갑 31.4%, 을 20%						
생명유지	주택용	'07. 8	1단계 낮은 요율 (월 12천원 한도)	28	27	33	47	53	58
총 계				3,974	5,835	6,800	6,770	6,815	7,141

자료 : 한국전력공사

[참고자료 2]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 현황

구 분	할인내용	적용기간
ESS 충전전력 (자가소비용 ESS 설치고객)	피크감축량 해당하는 기본요금 할인	'16. 4 ~ '26. 3 ('17.5월 개정)
초중고교 (초중고교 및 유치원)	동·하계 6~50%(냉난방) 할인	'14. 6 ~ ('17.1월 개정)
	기본요금 당월피크 적용	'16.12 ~ ('17.1월 신설)
미곡종합처리장 (정부지원 생산자단체 RPC)	월 50% 할인	'16. 1 ~ ('18.1월 개정)
천 일 염 (천일염 생산설비)	월 20% 할인	'16. 1 ~

자료 : 한국전력공사